

등록번호	세무2과-10901
등록일자	2016.4.29.
결재일자	2016.5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2팀장	세무2과장	기획재정국장
이정아	이원봉	박해선	05/02 한수경
협 조	지방소득세1팀장 김병갑		

**2016년 5월**

**『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의 달』 운영계획**



**기획재정국  
세 무 2 과**

# 2016년 5월

## 『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』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

2016년 『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확정신고·납부의 달』을 맞이하여 우리구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·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

### I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개요

- 납세의무자 :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- 과세표준 :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
- 세율 : 소득세율의 10% 수준 누진세율
- 납세지 : 「소득세법」 제6조~제8조에 따른 납세지(주소지,거소지)
- 신고납부기간 : '16. 5. 1. ~ 5. 31.(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까지)
- 과세기간 : '15. 1. 1. ~ 12. 31.
- 신고납부 :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

### II 세입현황

- '16년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세입목표 : 9,880백만원(가배시)
- '15년 확정신고 현황

(단위:건,백만원)

구분	합계		수기납부		전자납부	
	건수	세액*	건수	세액	건수	세액
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	9,134	7,812	6,055	5,333	3,079	2,479

\* '15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액(8,296백만원)의 94.17%

### Ⅲ

## 중점 추진 사항

- 중구 홈페이지, 지역언론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 홍보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·납부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

### Ⅳ

## 세부 추진 계획

- 납세홍보 및 신고·납부 안내 철저
  - 구청에 입간판 설치
  - 관할 세무서 및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납세홍보 협조 요청
  -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
    - － 구청홈페이지, 전광판,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고·납부 홍보강화
    - － 전산정보과, 공보실 등 관련부서 협조요청
- 신고·납부 지도창구 설치 운영
  - 운영기간 : 2016. 5. 1. ~ 6. 30.
  - 설치장소 : 세무2과 지방소득세1·2팀
  - 운영요령 :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·납부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방법 등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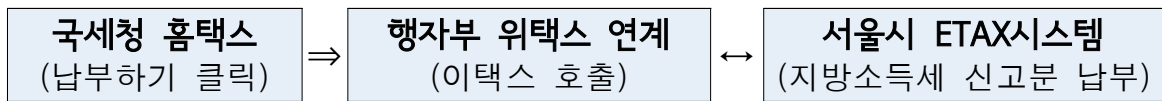
● 다양한 신고·납부 편의 제공

○ 국세(종합소득세)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

< 신고납부 체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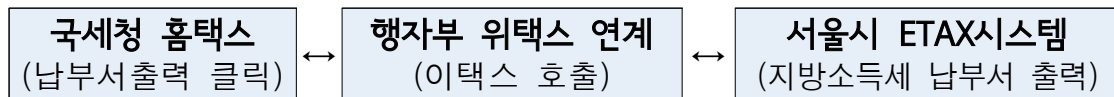
▶ 홈택스에서 「납부하기」 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

- 서울시분 경우 위택스에서 회원확인 없이 바로 ETAX 화면에서 전자 납부 가능



▶ 홈택스에서 「납부서출력」 클릭시 ETAX에서 납부서 출력서비스

- ETAX 출력 납부서 서식 개발 : 수납용 2차원바코드 및 전용계좌번호 생성 출력



○ 국세(종합소득세)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

-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‘전자납부번호’ 및 ‘가상계좌’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, ATM 등 납부

○ 납부방법

- 계좌이체 : 전 은행
- 납부시간 : 365일 24시간 가능(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불가)

○ 신용카드 납부

- 납부시간 : 365일 24시간 가능(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)
- 납부가능 카드 : 우리, BC, 삼성, 현대, 롯데, 신한, 외환, KB국민, NH, 하나, 씨티, 광주, 전북VISA, 제주VISA, 수협

## V

## 행정 사항

- 2016.4.29. :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
- 2016.5.2.~5.31. : 구청 입간판 설치
- 2016.5.2. : 전산정보과, 공보실에 신고납부 홍보의뢰
- 2016.6.3. : 신고납부 현황 제출(->서울시)

- 붙임 : 1. 신고·납부 안내문(안) 1부.  
2. 홍보문안 및 배너 1부.  
3. 신고납부 실적 제출 서식 1부. 끝.